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9
----------	-----

2023. 9. 1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육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2023년 9월 7일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육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상위법과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올바르게 변경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을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으로 수정함(안 제1조)
- (현행) ‘성평등’ → (개정) ‘양성평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현행 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개념 정의가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 적용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조문 체계와 형식 및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사용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음.

- 현행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됨을 제1조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안 제2조의 “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동일한 뜻에 대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명시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상이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임.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과 정의 규정이 같고 의미하는 바가 같으므로,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법체계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교 교육현장에서 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혼돈 없이 하고 교육적 활용과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또한,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을 살펴 보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북을 포함하여 총 6곳의 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북과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양성평등(성평등)조례 제정 현황 >

(2023년 09월 기준)

교육청	조례명	공포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7. 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3. 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7.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2021. 2. 18.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12. 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2020. 5. 19.

다. 종합의견

-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사용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과 법체계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현행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정책과 세부사업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⁹⁾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바르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과 교육적 적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3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p320~323), 202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p318~321)
 (예) 성평등 교육, 성평등 자료보급,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평등”이란”을 “양성평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과”를 “양성평등과”로, “성평등을”을 “양성평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한”을 “양성평등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으로,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 관점”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성평등 문화”를 “양성평등 문화”로, “성평등 교육·정책”을 “양성평등 교육·정책”으로, “성평등 전담”을 “양성평등 전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교육환경”을 “양성평등 교육환경”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성평등·교육정책·행정”을 “양성평등·교육정책·행정”으로,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으로, “성평등에”를 “양성평등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을“(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을 “양성평등 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성평등한”을 “양성평등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u></p>	<p><u>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성평등</u>”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p> <p>2. “<u>성평등 교육</u>”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u>성평등과</u>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p>	<p>제2조(정의) ----- -----.</p> <p>1. “<u>양성평등</u>”이란 ----- ----- ----- -----.</p> <p>2. -<u>양성평등</u>----- ----- ----- ----- <u>양성평등과</u> ----- ----- -----</p>

며, 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성평등 교육환경”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성평등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 마. (생략)

4. (생략)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등 성평등 교육·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양성평등을 -----

-----.

3. 양성평등 -----

----- 양성평등한 -----
-----.

가. ~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

-----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정책-----

-----.

② -----

----- 양성평등-----
-----.

③ ----- 양성평등 관점-----
----- 양성평등 문화 -----
양성평등 교육·정책 -----
----- 양성평등 전담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생략)
4.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계획
5.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
6. 성평등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개발·보급
7.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9. (생략)
10.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양성평등 -----

-----.

② -----
-----.

1. 양성평등 -----

2. 양성평등 -----

3. (현행과 같음)
4. 양성평등 -----

5. 양성평등 -----

6. 양성평등 -----

7. ----- 양성평등 -----

8. 양성평등 -----

9. (현행과 같음)
10. ----- 양성평등 -----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 2. (생략)
-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4.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교육정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명과 담당부서의 장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전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①

----- 양성평등 교육환경 -----

----- 양성평등위원회 -----
-----.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양성평등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양성평등·교육정책·행정 -----

----- 양성평등 정책 -----

-----.

④ -----
----- 양성평등 -----
-----.

원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실태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교육당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자격 연수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성평등 관련 직무연수 과정이 운영되거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양성평등 교육 -- 양성평등에 -----

-----.

제10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 ① -----

----- 양성평등 -----
-----.

② -----
---- 양성평등 -----
-----.

③ -----
----- 양성평등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양성평
등 교육 ----- 양
성평등 의식-----
-----.

⑥ ----- 양성
평등한 -----

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성평등 및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강화
3. (생략)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

-----.

1. (현행과 같음)
2. 양성평등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양성평등 -----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1. 4. 20.>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